

# 재무위원회 규정

사규번호	규정 2020 - 1
담당팀	기획팀
제정일자	2020.03.20
개정일자	2024.04.25

## 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태영건설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정관 제38조의2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의한 재무위원회 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3 조 (권한 및 기능)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필요시 기타 재무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## 제 4 조 (구성 및 위원장)

- ① 위원회 위원 (이하 ‘위원’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5 조 (소 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 제 6 조 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 제 7 조 (부의 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단,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한다.

- ① 자금조달 (장단기차입금 및 한도대)
- ② PF대출 및 금융약정
- ③ 채무보증 / 담보제공
- ④ 50억 이상 500억 미만 일반법인 주식 취득 / 처분  
30억 이상 600억 미만의 既 사업법인 주식 취득 / 처분  
10억 이상 200억 미만의 既 투자법인 주식 유상증자
- ⑤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재무위원회의 의사록 제출이 필요한 모든 재무사항
- ⑥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약정
- ⑦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
## 제 8 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 9 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/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재무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재무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

## 제 10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

## 제 11 조 (간 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 제 12 조 (부 칙)

- ① 이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